

정 부 합 동 감 사 결 과

주 의 요 구

제 목 산림사업 시행자 선정 부적정

기 관 명 광주광역시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

내 용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관련 [별표1]의 규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산림소유자,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 국유림영림단 외의 자로서 산림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아래 [표]와 같이 기술수준·자본금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산림사업법인을 등록하여야 한다.

[표] 산림사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의 등록기준

산림사업의 종류	산림사업의 범위	자격요건		
		기술수준	자본금	시 설
2. 숲가꾸기 및 병해충방제	가. 조림 나. 숲가꾸기 다. 벌채 라.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다음의 모두에 해당하는 인력요건 1) 기술1급 이상인 산림경영기술자 1명 이상 2) 기술2급 이상인 산림경영기술자 2명 이상 3) 기능2급 이상인 산림경영기술자 4명 이상	1억원 이상	사무실

또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제3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른 법령에서 허가·면허·등록·신고 등을 필요로 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도록 정하였을 경우, 당해

허가·면허·등록·신고 등을 하였거나 해당 자격요건을 갖춘 자와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산림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 산림사업법인(숲가꾸기 및 병해충방제) 등 자격요건을 갖춘 자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데도, 광주광역시 동구 등 총 5개 구에서는 조림, 조림지가꾸기 등 총 13건 152,713천원의 산림사업을 건설업, 조경식재, 조경시설물 설치공사업자와 법령에 위배되게 계약체결(수의계약)하여 사업을 시행하였다.

그에 따라 광주광역시, 전라남도를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로 하고 있는 산림조합, 산림사업법인 등 정당한 사업자가 산림사업에 참여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조치할 사항 광주광역시 동구청장, 서구청장, 남구청장, 북구청장, 광산
구청장은

[주의] 앞으로 산림사업을 할 수 있는 자격요건을 갖춘 자가 산림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